

## 전문병원 종별변경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안내

-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### ① 적용 대상

-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이 유지되는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의 종별이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, 그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제3장에 따라 전문병원 의료질평가를 받은 기관

### ② 수가의 산정

- 종별 변경에도 불구하고, 종별 변경의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결과에 따라 '가-24-1 전문병원(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) 의료질평가지원금'을 각 대상 연도에 산정

### ③ 적용시기

- 2022년 1월 1일부터 종별이 변경되는 요양기관에 적용